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7호

발행일: 2022. 10. 14. (금)

제400회 국회(정기회, 2022. 9. 1. ~ 2022.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역동적 교육혁신

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다. 에너지안보 확립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400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제7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400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장애인 창업·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 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격대학에 일반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촌 및 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어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의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32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교육위원회(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6	행정안전위원회(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 의원 등 11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0인
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0인
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
1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3인
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0인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등 10인
2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등 10인
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등 10인
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2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의원 등 11인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2인
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1인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3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6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역동적 교육혁신,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확립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역동적 교육혁신

개요

정부는 디지털,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다섯 번째를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 아래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교자·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규제를 혁신합니다. 부실·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원해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뒷받칩니다. 이는 지난 호에서 주요 이슈로 다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과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언택트 시대’ 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원격학습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교육위원회	<p><u>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의 요구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p> <p>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함(안 제29조의2).</p> <p>나.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안 제34조의5제3항 및 제4항).</p> <p>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및 안 제54조의2 신설).</p>	2022-09-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대학규제 혁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 마련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체계를 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 승인 기준 (2022. 9.) (교육부)

추진 배경

- 원격수업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의 혁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국내·외 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해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필요
 -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 및 양질의 원격수업 제공을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

추진 경과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추진 계획 발표: '20. 9.
-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법적 근거를 포함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및 시행: '21. 2.
- 온라인 학위과정 6개 대학 7개 과정 승인: '22. 2.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22. 9.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국내대학 단독·공동 운영 가능
-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 개정: '22. 9.
 - 「대학등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반영, 심사 기준 일부와 신청서식 개정

< 참고 :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법적 근거 >

○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제5조(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석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출처: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 개정\(22.9.30.\)](#) 교육부 누리집 2022. 10. 7.

참고 자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2021. 4.

강득구 의원안: 원격대학에 일반·특수대학원 설치 및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28.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15.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6. 16.

-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대체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원격수업은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이용하여 교수와 학생이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고 기존의 대면수업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대학 원격수업의 질이 낮고 원격수업 관련 기반이 미흡하여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의 원격수업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검토할 수 있음
- 대학은 원격수업 관련 교수학습방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이 구비된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원격수업 관련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들의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수업 실시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교육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20-11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ICT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망 신기술, 신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연구중심 대학원을 중심으로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원 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원 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1\):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7 - 08

이 연구에서는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지속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공과 교양을 양축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더불어, 학사 운영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과정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혁신 방안](#)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2016. 12.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대학이 길러 내야 할 인재의 모습을 “창의적 인재” 또는 “창의적 융합 인재”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사회현상이나 일터에서 새롭게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조해내는 인재라고 할 수 있음. 대학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할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학사제도, 교수 학생지원 체계, 산학협력, 정부지원체계 등 대학 운영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됨.

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 신산업 육성

개요

정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섰습니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를 보완하여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고,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p>	2022-09-27 (원안가결)
2		<p>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남방큰돌고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한 관광선박의 접근 등으로 인해 해당 종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한 위협이</p>	2022-09-27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를 작성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국내 연안 주요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포유동물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해양보호생물의 관찰·관광 활동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률상 부담금의 내용이므로, 해당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2022-09-27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과제목표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주요내용

-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 확대 추진
-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년)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해양수산부가 실현하겠습니다.

1.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 해운산업의 세계 선도 경쟁력 확보
-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운영 효율화
-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지원

2. 어촌소멸 선제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 어촌지역 활성화 본격 추진
-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
- 해양관광 기반 강화 및 항만재개발 활성화

3. 탄소배출과 재해가 없는 해양수산 구현

-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내거티브 실현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 마련

출처: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2021. 12. 29.

참고 자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안: 경영이양직불제 보완](#) 2022. 8.

[이양수 의원안: 직불제도 수혜대상 확대](#) 2022. 4.

[위성곤 의원안: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 2022.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 12.

위성곤 의원안: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조사 등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해양수산부 2022. 1.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 해양수산부 2022. 1.

[해양수산업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해양수산부 2022. 1.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수산업 대응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12. 31.

본 연구는 해양포유류 보호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의 해양포유류 관련 법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수산업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미국 및 주요 선진국에서 직면하게 될 국내 수산물 수출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이 해양포유류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추진 방안 수립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12. 31.

본 연구는 국가양식혁신체계의 관점에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모델 제시를 통해 클러스터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민간 참여형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주도해 가는 SPC는 혁신성에 기반을 둔 수익성 추구가 필수이나 정부 재정 투입은 공공성이 담보가 되어야 함. 스마트 양식 생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인식하는 가치 또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발전 방안 수립시 고려되어야 함. 혁신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발전 방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5. 26.

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출된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편익이 일반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스마트 양식산업의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9. 12. 19.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해 각

국은 양식산업의 고도화 및 규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정부도 기존 양식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관련 제도,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다. 에너지안보 확립

개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OPEC의 석유 감산 결정 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관련 예산으로 2022년 4조 5,265억 원, 2023년 안 4조 2,64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원전산업), ▲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 수급 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하며(에너지안보), ▲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유망 신산업 기술 개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저탄소 전환·신산업 육성), ▲ 에너지 시설 개선과 기술 개발 지원,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에너지안전)을 목표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에너지안보 및 사용, 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u>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p>	2022-09-2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p> <p>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p>	2022-09-27 (원안가결)
3		<p>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 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도모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92조의제2제1항).</p>	2022-09-27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과제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 내용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022. 7. 5.) (산업부)

대한민국정부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 7.5.

대한민국정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수립합니다.

대국민 공청회(6. 21.), 에너지위원회(6. 23.)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토론회 개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대한민국정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 2030년 발전 비중에서 원전을 30% 이상으로 확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전제로 계속운전 추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
- 보급여건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합리적으로 재정립,
태양광, 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 도출
-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 감안해 활용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 대응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 국제협력 통한 수입선 다변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대한민국정부

시장원리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3대 부문 에너지 수요효율화 혁신,
공급 →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산업)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가정·건물) 에너지캐시백 전국 확대, 대형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수송)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 원 투입) 추진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
취약층 보호 강화

출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2022. 7. 5.

참고 자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익동 의원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2021. 4.

양금희 의원안: 에너지 수급통계 관련 자료제출의무 신설 등 2021. 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안: 소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2021. 6.

[송갑석 의원안: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2022.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 제출안: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규정 신설 등](#) 2020. 9.

[이학영 의원안: 구역전기사업자 의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준 상향 등](#) 2021. 11.

[이주환 의원안: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2022. 5.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8. 16.

유럽의 안보 상황 변화는 향후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넘어 안보·경제·정치면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안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이전 대서양 동맹의 약화 원인과 당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장기화의 국내 경제·에너지 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이슈리포트」 2022.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24)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은 개전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높은 수준에서 지속 중.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공급 위축으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은 심화. 본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과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와 에너지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제시.

[에너지복지 정책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국민 수용성 연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022. 4. 30.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를 위해 추가되는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수용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에너지복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재정 확대의 국민 수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세금 수준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WTP(평균, 중위)는 각각 4,428원과 3,048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편익 분석 측면에서 사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로 환산되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질적 제고에 따른 총 편익을 나타낸다.

[유럽 국가의 변동적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국가 간 전력거래와의 연관성 분석: 동북아 지역에 대한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 4. 30.

지난 몇 년 사이 각국이 앞 다투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표방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대세로 정착되어 가는 흐름이다. 더욱이 COVID-19로 인한 경제활동 및 에너지소비 감축이 더해지며 공급믹스 측면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는 듯하였다...그러나 2021년 들어 발생한 여러 가지 돌발변수들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기에 이른다.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한파로 ERCOT(Electric Reliability Council of Texas) 공급권역 내 약 400만 가구가 정전을 겪은 사태, 그리고 2021년 9월 중순 영국 해상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약 30%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멈추게 되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시사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은 그 변동성으로 인

해 에너지 공급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돌발변수에 대비하여 각자 나름의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대비책을 중·단기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1년부터 예고되기 시작한 에너지 공급안정성 이슈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높이고, 국가간 전력망 연계 및 거래를 확대하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의 대(對)러 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2. 24.

우크라이나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대러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안보정책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를 주시하면서 관련 외교안보정책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보고서 2019. 12. 5.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의 거주지 위치와 지형 등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의 집행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된 에너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는 자료를 축적하고 정확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할 경우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소비의사를 표현한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동 보고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향후 개별 가구의 상황과 특성에 기인한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